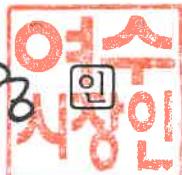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빙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2024.12.06



여수시 조례 제2161호

붙임 여수시 빙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집밀집구역”이란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특정빈집”이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정비지원계획”을 “빈집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빈집밀집구역 또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8조의 제목 “(빈집 활용)”을 “(빈집의 매입 및 활용)”으로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특정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2. 개축·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법 제65조와 「농어촌정비  
법」 제133조에 따르며,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철거·조치 명령을 받은 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lt;신 설&gt;</u>	<b>제2조(정의)</b>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빈집밀집구역” 이란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빈집우선정비구역” 이란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농어촌 또는 준농 어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특정빈집” 이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u>&lt;신 설&gt;</u>	
<b>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b> ① (생 략) ② <u>빈집정비지원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u>&lt;신 설&gt;</u>	<b>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b> ① (현행과 같음) ② <u>빈집정비계획</u> _____  1. ~ 5. (현행과 같음) 6. <u>빈집밀집구역 또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b>제7조(사업비 지원)</b>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b>제7조(사업비 지원)</b>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b>제8조(빈집 활용) ① · ② (생 략)</b>	<b>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b>
<신 설>	<p><b>제10조(이행강제금)</b>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p> <p>② 특정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p> <p>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p> <p>2. 개축·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p> <p>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법 제6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133조에 따르며,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p>